상 주 시

시 보

www.sangju.go.kr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074호** **2019. 12. 16.(월)**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상 주 시

■ 고　　시

○ 모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1회) 고시(제2019-233호) ····· 3

○ 솔보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제2019-235호) ····· 4

○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 고시(제2019-239호) ····· 5

○ 사도개설허가 고시(제2019-245호) ····· 7

○ 2020년도 예산 고시(제2019-247호) ····· 8

■ 공　　고

○ 화서 제2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 공고(변경)(제2019-1093호) ····· 9

○ 상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입법예고(제2019-1108호) ····· 16

회람								

발　행: 상주시　　편　집: 공보감사담당관

상 주 시

고 시

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시행 계획이 변경되어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 성 희

2019년 11월 22일

상주시 고시 제 2019-233호

모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1회) 고시

1. 사업의 명칭 : 모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 균형발전 도모
3. 사 업 비 : 5,500백만원(국비 3,850 시비 1,650)
4. 주요 사업내용
   가. 기초생활기반확충 : 다목적광장, 복지회관리모델링, 화목주차장조성, 세천안전휀스 설치
   나. 지역경관개선 : 마을안길 정비, 중모천변산책로(금계천) 조성, 시가지 중심도로정비, 마을안내간판설치, 간판정비
   다. 지역역량강화 : 교육·훈련, 컨설팅, 홍보, 마을 경영지원 등
5. 사업 시행자 : 상주시장
6. 사업시행기간 : 2016년~2020년(5년간)

※ 기타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개발지원과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가능 (상주시 개발지원과 지역개발담당 ☎ 054-537-7715)

상 주 시

고 시

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솔보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59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 성 희

2019년 11월 29일

상주시 고시 제 2019-235호

솔보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솔보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의 목적 :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 균형발전 도모
3. 사 업 비 : 204.7백만원(국비 123, 지방비 51.7 자부담 30)
4. 주요 사업내용
   ° 지역소득증대 : 창고 건립 1식
5. 사업 시행자 : 상주시장
6. 사업시행기간 : 2018년~2020년(3년간)

※ 기타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개발지원과에 비치된 기본 및 시행 계획서 열람가능 (상주시 개발지원과 지역개발담당 ☎ 054-537-7715)

상 주 시

고 시

상주시 계림동일원에 시행하는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 성 희

2019년 12월 3일

상주시 고시 제 2019-239호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 고시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나. 위 치: 상주시 계림동 134-7번지 일원 / 96,268㎡
   다.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4년간)
   라. 비전·목표: 주거복지 실현 /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선 / 지역상권 활력증진 / 사회통합 실현
   마. 추진전략
      1) 소규모 주택정비 기반마련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2) 생활SOC 공급확대를 통한 생활 편의시설 확충
      3) 지역상권 특화계획을 통한 상권활력 증진
      4)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계획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
   바. 사업비 구성
      1) **마중물 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 조성 등 8건 / 134억원**
      2) 부처협업사업: 다함께 돌봄사업 등 3건 / 463.5억원
      3) 민간참여사업: 904.3억원

4) 기 금: 39.8억원

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열람

가. 열람기간 : 19. 12. 3. ~ 20. 1. 2. (30일간)

나. 열람장소 : 상주시청 도시과 도시재생팀

다. 열람내용 :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라.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게재 생략)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 >



※ 위 활성화계획 종합구상도는 사업추진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상 주 시

고 시

「사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사도개설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 성 희

2019년 12월 10일

상주시 고시 제 2019-245호

사도개설허가 고시

사업시행지의 위치	상주시 내서면 고곡리 산47-1 외 1(산47-2)						
사업의 명칭(목적)	기존창고 및 숯생산공장 신축부지로의 진출입 도로 개설						
사업의 규모	연장 223.1m (B=5.5~7.5m)						
피허가자	이정*						
사업시행기간	허가일로부터 1개월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편입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내서면 고곡리	산47-1	임	4,684	1,428	임광*	
		산47-2	임	801	412	임광*	

상 주 시

고 시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6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 성 희

2019년 12월 12일

상주시 고시 제 2019-247호

2020년도 예산 고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038,000,000	100.00%	841,322,000	100.00%	196,678,000	23.38%
일 반 회 계	926,100,000	89.22%	749,000,000	89.03%	177,100,000	23.64%
기 타 특 별 회 계	22,800,000	2.20%	23,900,000	2.84%	△1,100,000	△4.60%
의 료 급 여	1,955,935	0.19%	1,719,993	0.20%	235,942	13.72%
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자 금	1,661,382	0.16%	1,816,066	0.22%	△154,684	△8.52%
치 수 사 업	4,010,276	0.39%	4,736,550	0.56%	△726,274	△15.33%
농 공 단 지 조 성	2,919,940	0.28%	4,664,000	0.55%	△1,744,060	△37.39%
수 질 개 선	5,067,816	0.49%	4,225,740	0.50%	842,076	19.93%
주 차 장	7,174,651	0.69%	6,036,651	0.72%	1,138,000	18.85%
대 지 보 상	10,000	0.00%	701,000	0.08%	△691,000	△98.57%
공 기 업 특 별 회 계	89,100,000	8.58%	68,422,000	8.13%	20,678,000	30.22%
상 수 도 공 기 업	60,600,000	5.84%	46,082,000	5.48%	14,518,000	31.50%
하 수 도 공 기 업	28,500,000	2.75%	22,340,000	2.66%	6,160,000	27.57%

상 주 시

공 고

우리시에서 조성한 『화서제2농공단지』 산업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양 공고합니다.

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 성 희

2019년 12월 4일

상주시 공고 제 2019-1093호

화서 제2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 공고(변경)

1. 농공단지 개요
   - ○ 위 치 :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일원
   - ○ 조성면적 : 140,177.6㎡
   - ○ 공사준공일 : 2013. 06. 26.
   - ○ 사업시행자 : 상주시장
2. 분양대상
   - ○ 공장용지 : 101,136㎡(30,593.6평-9개 블록)
   - ○ 최소 분양면적 : 6,922.7㎡(2,094.1평)
3. 공고기간 : 2019. 12. 04. ~ 2019. 12. 24.(20일)
4. 신청서 접수
   - ○ 기 간 : 2019. 12. 26. ~ 분양완료시
   - ○ 접수 및 문의처 : 상주시청 경제기업과(☎054-537-7410~12)
   - ○ 제출서류 : 입주계약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업체 소개서 1부

입주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5. 유치업종

○ 음식료품제조업(10,1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가목2)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업체 지붕위에 한함)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사업성검토) 및 36조(환경성 검토)의 규정에 의한 제한업종과 단지내 입주업체 생산 활동 및 환경에 지장을 주는 사업장은 제외

6.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농공단지의개발 및 운영에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7. 입주우선순위

○ 농·축산물 등 현지 부존자원을 50%이상 활용하는 기업체

○ 현지인을 50%이상 고용하는 기업체

○ 재무구조가 건전하며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 분양대금 일시납 또는 우선 완납하는 업체

○ 본사가 이전하여 입주하는 업체

○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업체

○ 수출실적이 높은 업체

○ 업체의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

○ 관내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 전기·전자 등 첨단업종 영위업체

○ 타 입주희망 업체와 계열화 및 전문화 연관업체

○ 외국인 투자업체

○ 위 사항에 불구하고 상주시 화서 제2농공단지 분양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로 결정한 업체를 최우선으로 함

※ 입주선정을 위한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상주시 화서 제2농공단지 분양 심의위원회에서 입주업체 결정

8. 분양가격 : 78,650원/㎡(260,000원/평)

○ 관련법에 의한 분양가격임.

9. 분양조건

○ 분양계약 및 분양대금 납부조건

구 분	계 약 금	선 수 금	잔 금	비 고
납부시기	입주계약시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일시납 및 계약일로부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납부금액	10%	40%	50%	

※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6%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계약금 : 계약금은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계약당일 납부하며 가계약 해지시 시금고로 귀속된다.

○ 납부방법 : 상주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시금고에 납부
(농공단지특별회계관리)

※ 납부기간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연체료의 징수)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율 적용

○ 할부이율 : 연6%

○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 분양대금 50%이상 납부시(계약금+선수금)

○ 소유권 이전 : 분양대금 100% 완납시

10. 기타 유의사항

○ 공고문(시보, 홈페이지 게시문), 유의사항 내용 등은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의 협의내용,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포함)와 건축·주차장 등에 관한 관련법규, 정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

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우리시 조례 등의 제정·개정,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정책에 따라야 합니다.)

○ 신청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문화재, 고저, 연약지반, 암반, 법면상태,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조성공사는 준공된 상태이나 준공인가(공고) 전에 분양하는 것이므로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 조성사업 준공인가(공고) 전에 토지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자체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 토지 사용 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면적산정

- 불가피하게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분양면적에 사면면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추후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공급면적은 지적측량(확정) 결과임.

○ 법인 대표자의 가족, 임원, 주주명의로 이중 신청할 수 없음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주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선정을 취소함

○ 관련자료는 상주시 경제기업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열람 가능합니다.

○ 분양신청 문의 : 상주시 경제기업과(전화 054-537-7410~12)

○ 분양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양식은 상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sangju.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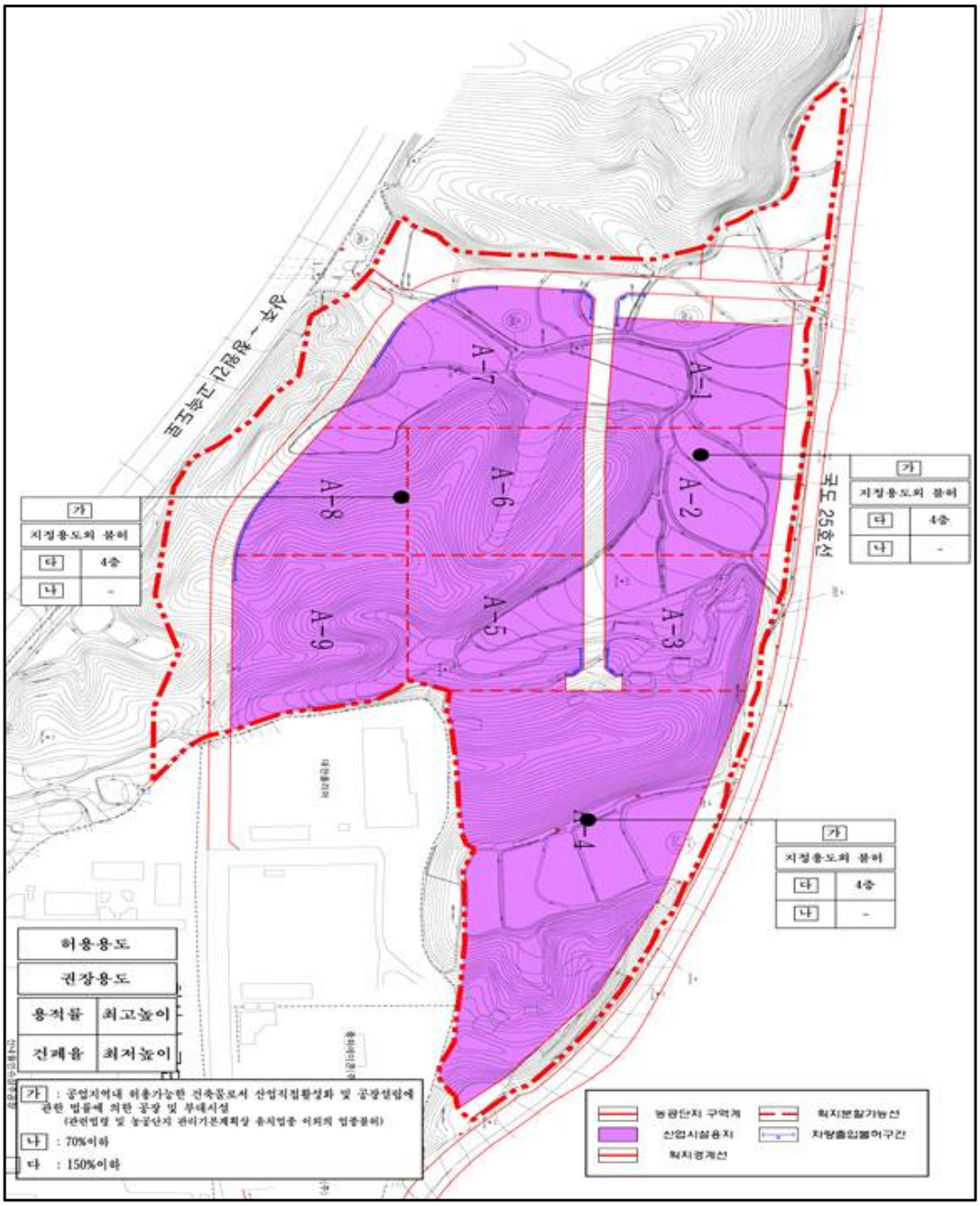
화서 제2농공단지 업종별 배치계획

분양대상 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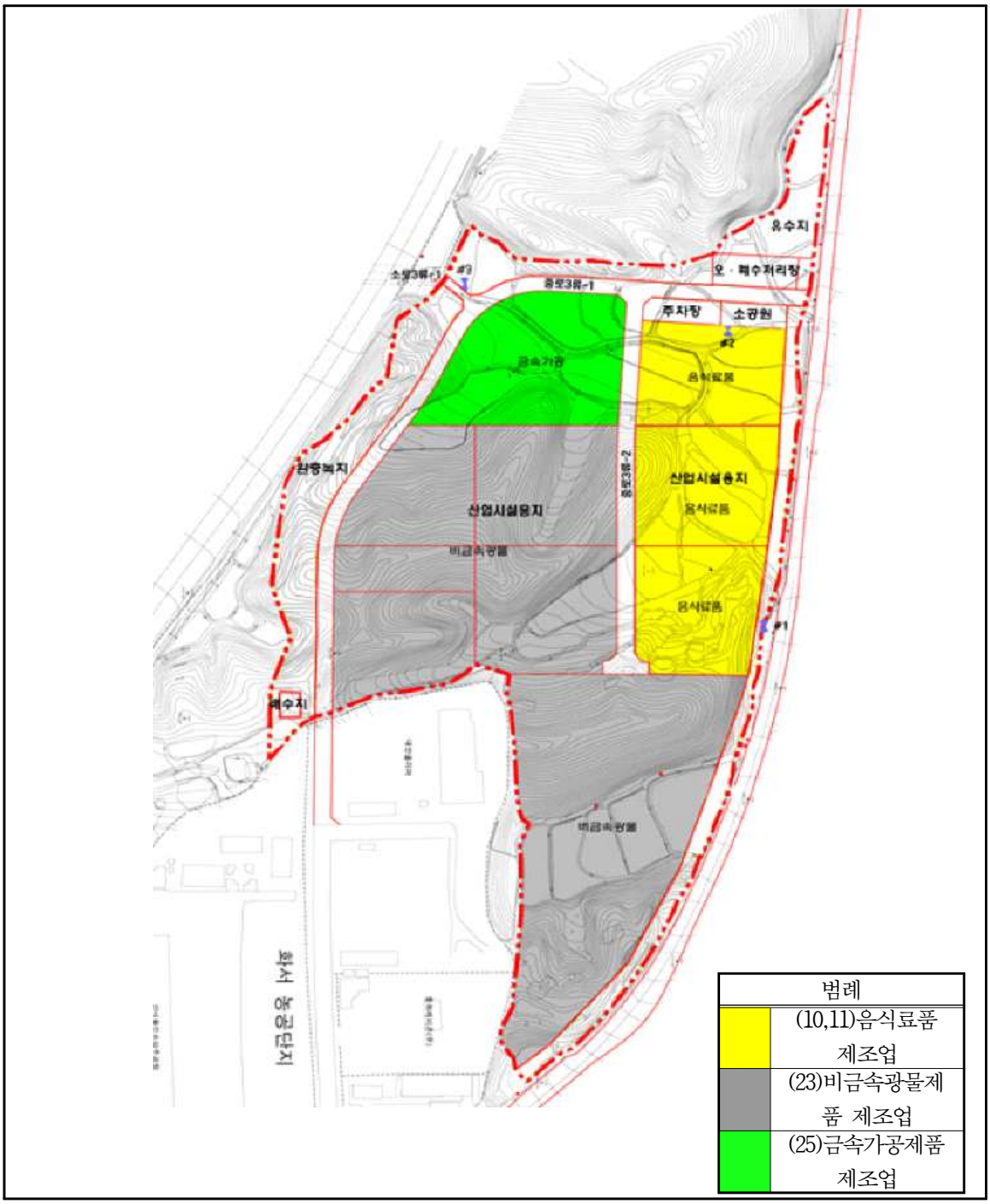
- 용 지 수 : 9개 블록
- 대상면적 : 101,136㎡(30,593.6평)
- 블록별 면적으로 분양

도면번호 (획지번호)	용도지역	면적(㎡)	유치업종	비고
계	**9개블록**	**101,136**		
A-1	공장용지	7,534.9	10,11 (음식료품제조업)	분양완료
A-2	"	8,801.8	10,11 (음식료품제조업)	분양완료
A-3	"	8,138.0	10,11 (음식료품제조업)	분양완료
A-4	"	28,958.6	23 (비금속광물제품)	
A-5	"	9,291.3	"	
A-6	"	8,940.0	"	분양완료
A-7	"	11,704.7	25 (금속가공제품)	
A-8	"	6,922.7	23 (비금속광물제품)	
A-9	"	10,844.0	"	분양완료

화서 제2 농공단지 용도구역별 평면도



화서 제2 농공단지 유치업종별 배치도



상 주 시

공 고

「상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 성 희

2019년 12월 11일

상주시 공고 제 2019-1108호

상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2조)

- 시장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3조)

-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전화 : 054)537 - 7166

○ E-mail : jomagu@korea.kr / FAX : 537-6089

○ 시 홈페이지 : www.sangju.go.kr(입법예고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할 곳 : (우37211)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제정안의 상세내역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상주시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총무과	
연 락 처	054-537-7166